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1. 10.(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2010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 (2010-65-267)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방송사업자(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의 2009년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2010년 방송평가」 개요

① 방송평가 대상 기간 : 2009. 1. 1 ~ 2009. 12. 31

②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 총 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

구분	지상파			SO	위성		PP		합 계
	TV	R	DMB		일반	DMB	보도	홈쇼핑	
사업자 수 (채널수)	48개 (TV 63개, R 153개, DMB 19개)			96개	1개	1개	2개	5개	153개 (340개)

② 「2010년 방송평가」 결과 주요 내용

① 지상파 3사(TV)

- KBS-1TV는 지난 3년과 유사한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 KBS2-TV, SBS-TV, MBC-TV는 평가점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10년 평가에서는 하락

② 지역방송(TV)

- GTB강원, JIBS제주, UBC울산, KBC광주, OBS경인은 꾸준한 상승을 보인 반면, KNN부산, JTV전주, TBC대전 등은 '10년 평가에서는 하락

③ 지상파 라디오

- 채널별, 연도별로 평가점수에 큰 변화가 없음

④ SO

- 내용·편성영역 평가에서는 MSO와 단독SO 간에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운영영역에서는 MSO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았음

⑤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 전년대비 평가점수 소폭 상승

⑥ 보도PP

- 점수가 약간씩 상승하였으며 MBN의 평가점수가 YTN보다 높음

⑦ 홈쇼핑PP

-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을 제외한 4개사의 평가점수가 소폭 하락

⑧ DMB

- 지상파DMB는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으며, 위성DMB의 평가점수는 하락

2) 하나방송(주) 구성주주의 주식처분 승인에 관한 건 - (2010-65-268)

-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조건('08. 2. 12)에 의거, 하나방송(주)이 제출한 하나방송(주)의 일부 구성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허가 심사 완료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신청내용

- 하나방송(주)의 구성 주주 3인이 최다액출자자인 (주)커뮤니스에게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자 함

② 심사기준

- 승인기준인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하나방송(주)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조건('08. 2. 12) >

모든 구성 주주는 최초 승인기간 만료일('11. 2. 11)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할 것(다만, 상속, 법원판결, 당해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통합, 그 밖에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방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② 주식처분 승인 보류 사유

-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심사단의 심사결과, 일부 구성주주의 주식처분이 승인조건에서 부여된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만큼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는 주주의 주식처분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주식처분 금지 시한이 아직 남아 있고 재허가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주식처분 허용은 당초 승인조건 부여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건 - (2010-65-269)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위해 마련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원안대로 의결함. (이경자 부위원장 불참)
- 세부심사기준(안) 주요 내용

① 기본 방향

- ①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 ②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 ③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
 - 계량평가 비중 : 종편PP 24.5%, 보도PP 20.0%

②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종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종편 70, 보도 90)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	30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35
	1-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25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종편 70, 보도 80)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	30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종편 60, 보도 70)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	30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	25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계량)	15	15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종편 50, 보도 60)	1-4-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	25
	1-4-2.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	20
	1-4-3.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	15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종편 250점, 보도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종편 90, 보도 80)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	25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	25
	2-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	30
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종편 80, 보도 60)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	25
	2-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	20
	2-2-3.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	15	15
2-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종편 80, 보도 60)	2-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	25
	2-3-2.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	20
	2-3-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	15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종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3-1. 사업추진계획 (종편 30, 보도 40)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	25
	3-1-2.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	15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종편 30, 보도 40)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	20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	20
3-3. 납입자본금 규모 (종편 60, 보도 60)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60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종편 35, 보도 45)	3-4-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25
	3-4-2.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20
3-5. 사업성 분석 (종편 15, 보도 25)	3-5-1.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	25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종편 30, 보도 40)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	20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	20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종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4-1. 재정적 능력 (종편 90, 보도 60)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30	20
	4-1-2. 부채비율(계량)	30	20
	4-1-3. 총자산 증가율(계량)	30	20
4-2. 자금출자 능력 (종편 60, 보도 45)	4-2-1.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4-2-2.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4-2-3.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30	25
4-3. 기술적 능력 (종편 50, 보도 45)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	25
	4-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	20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편·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종편 40, 보도 40)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25	25
	5-1-2.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15	15
5-2.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종편 40, 보도 40)	5-2-1.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	20
	5-2-2.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	20
5-3. 출연금 (종편 20, 보도 20)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20

③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공익성 관련)
-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공익성 관련)
- ③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 관련)

※ 제63차 위원회(10. 11. 2)에서 보고·접수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함

- ④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 관련)
- ⑤ 납입 자본금 규모(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 ⑥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④ 평가방법 관련 주요 사항

① 주요주주의 범위

-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설정

② 주주구성 변경금지 방안

-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 상속, 법원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③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심사 시 평가방안)**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 감점처리*,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신청법인이 주주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

④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

⑤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 (설립예정법인)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자본금(법정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
 - (기존법인)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
- ※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 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

⑥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자본금 납입 담보를 위해 모든 구성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
-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
- (건전성 평가방법)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⑦ 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

-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
-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 승인신청요령(안) 주요 내용

- ①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②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4)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건 - (2010-65-270)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승인 신청 공고’ 등의 추진 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함. (이경자 부위원장 불참, 양문석 위원 등 안건 의결시 불참)

○ 추진일정 주요 내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 ('10. 11. 10)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10. 11. 12)
- 승인 신청서류 접수 ('10. 11. 30. 09:00 ~ '10. 12. 1. 18:00)
- 「승인 심사계획」 의결 (11월 ~ 1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12월 중)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상기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보고사항

1)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

○ 제26차 위원회 보고('10. 5. 7)후, 방송보조국 구축 조정 회의(3회) 등을 통해 마련한 7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일부 조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 총 83개국 중 12개국에 대한 방송보조국의 구축 시기를 일부 조정

※ 조정 이유 : 기존 아날로그 지상파방송과의 혼신방지를 위해 구축시기·출력 등의 조정 필요성이 있고, 사업자간 공동구축을 통한 효율화 도모

< 방송보조국 구축 계획 조정안 >

사업자		'10. 12월	'11. 6월	'11. 12월	'12. 12월	합 계
KBS	당초계획	4	4	9(5)	10(10)	27(15)
	변경계획	4	7(3)	8(6)	8(8)	27(17)
부산MBC	당초계획	2(1)	3(2)	2(2)	2(2)	9(7)
	변경계획	1(0)	3(2)	1(1)	4(4)	9(7)
광주MBC	당초계획	1	2	1	10(10)	14(10)
대전MBC	당초계획	2(1)	2(2)	2(2)	1(1)	7(6)
	변경계획	1(0)	2(2)	2(2)	2(2)	7(6)
춘천MBC	당초계획	5(3)	6(5)	6(6)	1(1)	18(15)
	변경계획	5(3)	6(6)	5(5)	2(1)	18(15)
제주MBC	당초계획	2(2)				2(2)
	변경계획			1(1)	1(1)	2(2)
대전방송	당초계획	2(1)	2(1)	1	1(1)	6(3)
	변경계획	2(0)	2(2)	1	1(1)	6(3)
합 계	재허가 조건	18(8)	19(10)	21(15)	25(25)	83(58)
	변경계획	14(3)	22(15)	19(15)	28(27)	83(60)

※ ()는 방송보조국 중 출력 100W 이하 방송국 수입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1. 15(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